

목 차

2016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하자!

특정감사 결과보고(□□ 업무지시 등)

2016. 12.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대상 현황.....	2
1. 감사대상자 인적 사항.....	2
2. 진정서 내용.....	2
III. 감사결과.....	3
1. 감사초점.....	3
2. 관련규정.....	3
3. 조사결과.....	4
4. 감사자 의견.....	12
5.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13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처장의 □□ 업무지시 등에 대하여 2016. 11. 25. ○○○○○처 직원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이에 □□ 업무지시 등에 대한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2. 감사대상

이번 감사는 ○○○○○처 처장 국토정보직 2급 김○○(이하‘피진정인’이라 한다), ○○○○○처 국토정보직 3급 최○○ 등 ○○○○○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 업무지시 등 진정에 따른 사실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6. 12. 5.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본사 8층 및 공간정보연구원 6층 감사장에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조사하였고, 감사실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12. 27.(화)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현황

1. 감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 속: 본사 ○○○○○처
- 성 명: 김○○(640805-1*****)
- 직 급: 국토정보직 2급
- 임 용 일: 2016. 4. 18.
- 현 직급일: 2016. 4. 18
- 징계처벌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표창사항: 해당사항 없음
- 주요 발령사항
 - ▶ 2016. 4. 18. 국토정보직 2급 상당(정원내 계약직)에 임함.
 - 처장에 보함(2016. 4. 18. ~ 2018. 4. 17.)

2. 진정서 내용

- ☐ □□ 업무지시
 - 특정업체 솔루션 구입 지시
 - 정보자원 고도화 및 확대 사업 준비과정 특정업체 자문 지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피진정인의 특근매식비 사용
 - 문화행사비 집행 부적정
 - ☐ 복무규정 미 준수
 - 출장 처리 후 출장목적과 다른 사적용무 처리

- 익일 출장 처리 후 당일 근무시간 출발

- 피진정인 근태를 본인 전결 처리

□ 직원에게 부당 대우

- 일부 직원 유연근무 승인 거부

- 공식회의 석상 및 평소 저급한 욕설 사용

- 특정직원 반복 무시(잘은 사무변경 등)

□ 직원으로부터 항응수수

- 퇴근 후 특정직원 호출하여 항응 제공 받음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의 금지, 제44조에 따른 임직원 상호존중

- 「직제규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전결사항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른 탄력근무 신청 및 승인

- 「인사규정」 제50조에 따른 징계사유

- 「징계규칙」 제8조에 따른 징계의 양정

3. 조사결과

가. 부당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

1) 정보자원 고도화 및 확대사업

- 피진정인은 ○○○정보통신(이하‘○○○’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김○○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 피진정인은 2016. 9. 2.(추정) **부사장님의 지시**¹⁾라고 하면서 연초 계획에 없는 「정보자원 고도화 및 확대 사업」추진을 ○○○○○처 계약직 6급 최○○(이하‘최○○’라 한다)에게 지시하였으며, 사업 준비과정(설계)에서 ○○○로부터 자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 ○○○는 자문과정에서 최○○에게 스토리지 컨트롤러, 포트 수 규격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최○○가 거절하자 피진정인에게 유선으로 자사에서 요청한 대로 설계변경이 되도록 부탁 하였으며,

- 피진정인은 최○○에게 ○○○의 요청과 다르게 설계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다.

1) 피진정인 문답서 내용: 2016년 흑자가 많아 부서별 추가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

Ⅲ 감사결과

1. 감사초점

- 직위를 이용한 ○○○ 업무지시 사실 확인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실 확인

- 복무규정 준수여부 확인

- 직원 부당대우 사실 확인

- 직원으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은 사실 확인

2. 관련규정

-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준수사항

-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윤리관 확립 및 청렴행동수칙, 제7조에

따른 품위유지, 제20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1조에 따른

- 피진정인은 2016. 10. 5. ○○○○○ 처 계약직 6급 허○○(이하‘허○○’라 한다)의 공사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 ○○○○○ 처 계약직 5급 김○○(이하 ‘김○○’라 한다), 최○○와 같이 회식을 하면서 ○○○ 김○○와 골프를 쳤다는 말²⁾을 하였다.
- 피진정인은 6~7년 전에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식에 참석한 직원(김○○, 허○○, 최○○)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자원 고도화 사업관련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정황상 도저히 옛날 일을 이야기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2) 특정업체 보안솔루션 구입 지시

- 피진정인은 2016. 11. 8.(화) 오전 ○○○○○ 처 정보전문직 5급 임○○(이하‘임○○’라 한다)에게 부사장님께서 지시한 것이라며 특정업체(○○○○인터넷기술) 보안솔루션 구입을 지시하였으며,
- ○○○○○ 인터넷기술 사업본부장 김○○ 이사에게 임○○의 연락처(전화번호, 웹-메일 주소 등)를 전달하였다.
- 그 결과 같은 날 11:35경 ○○○○○ 인터넷기술 담당자 박○○로부터 보안솔루션 관련 제품 소개서 등이 임○○의 웹-메일로 수신³⁾되었다.
- 2016. 11. 21.(월) 임○○는 수신된 메일을 바탕으로 보안 팀 국토 정보직 4급 송○○(이하‘송○○’라 한다), 정보전문직 7급(갑) 최

○○(이하‘최○○’라 한다)과 협의 후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과 중복되어 구입이 불필요하다고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다.

- 임○○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진정인은 보안솔루션 구입과 관련 업무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임○○의 팀장 역할⁴⁾을 박탈하고, 같은 해 11. 22.(화) 최○○에게 보안솔루션 구입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 피진정인의 지시를 받은 최○○가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과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 담당팀장인 송○○에게 협의 후 보고 드리겠다고 하자 심한 욕설⁵⁾을 하였다.
- 피진정인은 2016. 12. 5.부터 ○○○○○ 처 직원들의 진정에 따라 특정 감사가 진행되자 최○○에게 보안솔루션구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1) 특근매식비 부당 사용

- 피진정인은 2016. 9. 2.(금) ○○○○○ 처 국토정보직 5급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특근매식비 사용이 가능한 식당을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표 1]과 같이 특근매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표 1] 특근매식비 사용내역

(단위: 원)

구분	일자	장소	사용 금액	사용자	비고
1	9. 2.(금)	○○○발돈곰탕	53,500	김○○, 임○○	저녁
2	9. 3.(토)	○○○푸드스토리	6,500	김○○	점심

2) 김○○, 최○○, 허○○ 문답서 내용: ○○○ 김○○와 골프를 쳤는데 본인과 실력차이가 너무 커 재미없다.

3) 안녕하세요. 임○○ 팀장님!!! ○○○○○ 인터넷기술에 박○○입니다. 저희 사업본부장 김○○ 이사님 지시에 따라 웹캠, 악성 URL, 웹 위변조탐지가 가능한 웹서버세이프가이드의 견적서와 웹서버세이프가드 소개서 및 나라장터 상품정보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 처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화 지원팀(임○○, 신효성, 김○○, 최○○, 허○○)의 팀장
5) ‘야 씨마 처장보다 팀장이 높냐? 말을 좇잖아 하나! 뻥하면 씨발놈들이 팀장 어찌고 저찌고’

구분	일자	장소	사용 금액	사용자	비고
3	9. 5.(월)	□□○새싹막회	99,000	김○□, 황○○, 박□□, 최○□	저녁
4	9. 8.(목)	□□집	46,000	김○□, 황○○ 외	저녁
5	9. 10.(토)	○○○푸드스토리	7,500	김○□	점심
6	9. 19.(월)	○○집	104,000	김○□, 황○○ 외	저녁
7	9. 20.(화)	□심	21,000	김○□, 송□□, 임○○	점심
8	9. 23.(금)	□심	28,000	김○□, 임○○	점심
9	9. 23.(금)	○○□□돈곰탕	75,000	김○□, 김○○, 유○○	저녁
10	9. 27.(화)	□심	35,000	김○□, 최○□, 허□□ 등	점심
11	11. 15.(화)	○○□□돈곰탕	50,000	김○□, 황○○, 이○○(웨□□□)	저녁

2) 문화행사비 사용 부적정

- ○□□□처에서는 직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6. 11. 15.(화), 18:30부터 부서 문화행사⁶⁾를 효자동 관내 CGV에서 실시하였다.
- 피진정인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역류성 식도염)로 부서 문화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처 국토정보직 5급 황○○(이하‘황○○’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에게 말하지 말고 웨이버스 이○○ 부장과 □□○○돈곰탕으로 나오게 하여 식사(음주 포함)를 하였다.
- 피진정인은 「2016년 ○□□□처 문화행사 결과보고서 제출(○□□□처 -4932:2016. 11. 16.)」 문화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본인과 황○○가 참석한 것으로 작성된 문서⁷⁾에 최종결재를 하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영화 관람권을 받는 등 문화행사비 사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6) 2016년 ○□□□처 문화행사 실시: ○□□□처-4876(2016.11.10.)

7) 2016년 ○□□□처 문화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처-4932(2016. 11. 16.)

다.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

1) 전결사항 처리 부적정

- 피진정인은 본사 실·처장의 조퇴·외출·휴가 및 출장의 전결권은 부사장·본부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표 2]와 같이 본인 전결로 처리하였다.

[표 2] 전결 처리 내역

구분	결재 일자	근태 구분	사유	최종 결재	비고
1	6. 29.	외출	(공무) 현장업무 교육	김○□	
2	7. 22.	외출	(공무) 하반기 ICT신기술 세미나 참석	김○□	
3	8. 10.	외출	(공무) 사회공헌 활동	김○□	
4	8. 19.	출장	DR관련 업무협의(행정자치부)	김○□	
5	8. 29.	출장	DR센터 업무협의, 제2차 CPO 워크숍	김○□	
6	9. 9.	출장	가족사랑의 날 행사	김○□	
7	9. 26.	외출	(공무) 개방형 직위 채용 심사 참여	김○□	
8	9. 27.	출장	교육원 이전부지 탐방	김○□	
9	10. 10.	출장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협의회 참석	김○□	
10	10. 12.	출장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회의 참석	김○□	
11	10. 19.	출장	측량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업무협의	김○□	
12	10. 24.	외출	(공무) 개방형 직위 채용 심사 참여	김○□	
13	10. 24.	출장	4차 산업혁명 세미나 참석	김○□	
14	11. 8.	출장	공공클라우드 세미나 참석	김○□	
15	11. 15.	출장	4차 산업혁명 세미나 참석	김○□	
16	11. 21.	출장	클라우드플랫폼 설계 연구과제 협의	김○□	
17	11. 24.	외출	(공무) 업무협의	김○□	
18	11. 25.	출장	측량통합시스템 업무점검	김○□	
19	11. 29	휴가(연차)	가사정리 차(11/30~12/2)	김○□	

2) 출장 후 업무처리 부적정

- 피진정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 차 출장(2016. 6. 9. ~ 6. 10.) 처리 후 6. 10. 국토정보직 5급 이□□(이하‘이□□’이라 한다)에게

행사 등록증을 주면서 대리출석을 지시하고 피진정인은 차량 수리 등 사적 용무를 처리 하였다.

- 피진정인은 제2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 차 출장(2016. 8. 30. ~ 8. 31.) 처리 후 8. 30. 아무런 연락 없이 등록시간이 되어도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아 이○○가 등록증을 대리로 발급받아 등록하는 등 출장 목적과 다르게 사적 용무를 처리 하였다.
- 피진정인은 측량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업무협의 및 운영위원회 참석 차 출장(2016. 10. 20. ~ 10. 21.) 처리 후 10. 20.(목) 측량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장이 있는 평촌으로 가지 않고 자택(경기도 □□)으로 퇴근하였다.
- 피진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비즈니스모델과 연구 세미나 참석 차 출장(2016. 10. 25. ~ 10. 26.) 처리 후 10. 26.(수) 오전 세미나에 참석 후 오후○○○에서 □□캐스트 이○○와 점심을 먹고 오후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않는 등 출장 목적과 다르게 사적 용무를 보았다.

3) 조기 퇴근

- 피진정인은 2016. 11. 16. 14:00경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자택(경기도 □□)으로 조기 퇴근하는 등 근태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라. 직원 부당 대우에 관한 사항

1) 유연근무 승인 거부

- 피진정인은 2016. 8월경 정보전문직 3급 김□□(이하‘김□□’이라한다)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금요일 유연근무를 신청하였으나 김수석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였으며,
- 피진정인은 2016. 9월경 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업을 진행하고자 유연근무를 요청하는 이○○에게 부서(○○○○처) 업무와 관련된 학업이 아니면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은 학력세탁을 위한 학교는 보낼 수 없으며, 학교를 가고 싶으면 타부서로 가라고 하는 등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유연근무 승인 요청을 거부하였다.

2) 인권침해적인 저급한 욕설

- 피진정인은 평소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에게 씨발놈이, 양아치, 씨바, 기집애, 바보야, 씹통이들아, 짱구야, 명충아 등 저급한 욕설을 하고, 직원을 부를 때 야, 너, 니들 등으로 공직자의 품위에 어긋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 외부업체 직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부서 직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업체 직원9)에게도 욕을 하였다.
- 피진정인은 결재를 받기 위해 보고하고 있는 이○○의 머리를 쥐어 박고, 국토정보직 5급 김□□(이하‘김□□’이라한다)에게 볼펜으로 배를

8) 서울 ○○ □□대로 11번길

9) 웨□□□ 이○○: 총괄이사(김○○) 회의 자리에서 ‘씨팔...진짜...’ 욕설과 실력 없이 영입만 하는 회사라 지칭

수차례 찌르는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였다.

- 피진정인은 김○○에게 ‘니가 일을 하나 업체가 일하지’라고 하며 김○○가 담당하는 DB운영업무에 대한 질과 양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너는 내가 면접 봤으면 붙지도 못했어. 운이 좋았어’라고 하는 등 직원을 비하 하였다.
- 피진정인은 DB관리 및 운영을 위해 채용된 김○○의 과거 경력 및 학력을 보고 과중한 사무분장¹⁰⁾을 하였으며, 부서 직원에게 ‘내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본인(김○○) 스스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등 특정직원을 괴롭히는 언행을 하였다.

3) 잦은 사무변경

- 피진정인은 부임 후 공식적으로 사무변경을 5차례¹¹⁾ 하였으며, 피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담당직원과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업무를 수시로 바꾸었다.

마. 직원으로부터 항응수수에 관한 사항

- 피진정인은 평소 직원을 심하게 꾸지람한 후 수시로 불러내어 [표 3]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비는 전부 직원들이 계산하였다.

[표 3] 호출직원 식사비 지급 내역

(단위: 원)

구분	일자	장소	금액	호출(계산)자	비고
----	----	----	----	---------	----

10) 정보시스템 운영 인수인계 방안(○로니처-5056: 2016.11.25.): 김○○ 사무분장-DB관리, 백업, 결과도 전산화 DB, 전자 결재시스템, 경영지원 시스템 운영,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경영지원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등

11) ○로니처 사무분장 조정: 정보운영처-1885(2016.04.20.), 정보운영처-2201(2016.05.12.), 정보운영처-2631(2016.06.14.), ○로니처-3552(2016.08.10.), ○로니처-4480(2016.10.13.)

구분	일자	장소	금액	호출(계산)자	비고
1	6. 1.	□□□연탄생불고기	80,500	송□□	
2	6. 14.	○○○부엌	108,000	임○○	
3	6. 27.	○○○연탄생불고기	60,000	송□□	
4	7. 27.	□□딘	150,000	박□□	
5	9. 12.	□□□부엌	71,000	송□□	
6	10. 26.	○□□부엌	78,000	임○○	
7	10. 26.	○□□바지락칼국수	30,000	황○○	
8	11. 2.	□□□백반	30,000	황○○	
9	11. 3.	○□□바지락칼국수	68,000	황○○	

4. 감사자 의견

- 피진정인은 본사 ○로니처 총괄 책임자로서 부서 운영관리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 명량하고 화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동료 간의 융화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 직위를 이용하여 부서 직원에게 특정업체 솔루션 구입 및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로부터 자문 받을 것을 지시하는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와 참여하지 않은 문화행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 그리고 규정¹²⁾을 위반하여 본인 근태를 전결 처리하고 출장목적과 다르게 사적 업무를 처리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조기 퇴근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유연근무 승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

12) 「직제규정시행규칙」 제13조(전결사항): 본사 실·처장의 조퇴·외출·휴가 및 출장의 전결권은 부사장·본부장으로 한다.

하였으며, 평소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

- 또한, 직원을 신뢰하지 못하여 사무분장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하였으며, 평소 직원을 심하게 꾸지람한 후 수시로 불러내어 식사(음주 포함) 등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관리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진정인은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5조(윤리관 확립 및 청렴행동수칙), 제7조(품위 유지), 제2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1조(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의 금지), 제44조(임직원 상호존중), 「직제규정시행규칙」 제13조(전결사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8조(탄력근무 신청 및 승인)를 위반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 제1호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관련 <별표1>“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3-가: 복무 질서 문란, 나: 직장분위기 저해)에 해당한다.

5.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 일 시: 2016. 12. 27.(화) 14:00 ~ 15:00
- 장 소: 본사 3층 감사실
- 참석위원: 최○○, 김○○, 이○○, 이○○, 김○○, 정○○, 유○○, 고○○, 김○○, 최○○, 김○○(간사)

- 심의결과: (중징계)

직위를 이용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등의 행위는 복무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직제규정시행규칙,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에 해당함.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1-1	본 사 (○○○○○처)	복무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직제규정시행규칙,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위반			1	이○○ 이○○ 김○○
계	1				1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일련번호	1-1	감사자	이○○, 이○○, 김○○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사 (○○처)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징 계 요 구

제 목 복무규정(준수사항) 등 위반

관 계 기 관 본사 ○○○○○처

징계 대상자 국토정보직 2급 김○○

징 계 종 류 중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6. 4. 18.부터 현재까지 본사 ○○○○○처에서 부서 운영관리 및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에 따라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5조(윤리관 확립 및 청렴행동 수칙) 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임원 및 보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1¹³⁾과 같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품위유지)에 따라 “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라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1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에 따라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4조(임직원의 상호존중)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내 직장을 내 집같이 여겨 명랑하고 화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여 올바른 건의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한 일은 칭찬으로 격려하며,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이해와 겸손으로 동료 간의 융화를 도모하고, 직장 내의 파벌 조성을 삼가며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제13조(전결사항)에 제1항에 따라 “본사 실·처장의 조퇴·외출·휴가 및 출장의 전결권은 부사장·본부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18조(탄력근무 신청 및 승인) 제2항에 따라

13) 임원 및 보직자의 청렴행동수칙

1.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4.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5.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탄력근무를 신청한 경우 승인권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 근무를 승인하되,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와 민원처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제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직원 상호 간에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업무지시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정보통신(이하‘○○○’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김○○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6. 9. 2.(추정) ①부사장님의 지시¹⁴⁾라고 하면서 연초 계획에 없는 「정보자원 고도화 및 확대 사업」추진을 ○○○처 계약직 6급 최○○(이하‘최○○’라 한다)에게 지시하면서 사업 준비과정(설계)에 ○○○로부터 자문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가 자문과정에서 스토리지 컨트롤러, 포트 수 규격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최○○가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최○○에게 ○○○의 요청과 다르게 설계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②2016. 10. 5. ○○○처 계약직 6급 허○○(이하‘허○○’라 한다)의 공사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 ○○○처 계약직 5급 김○○(이하‘김○○’라 한다), 최○○와 같이 회식을 하면서 ○○○ 김○○와 골프를 쳤다는 말¹⁵⁾을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③2016. 11. 8.(화) 오전 ○○○처 정보전문직 5급 임○○(이하‘임○○’라 한다)에게 부사장님께서 지시한 것이라며 특정업체(○○○○인

터넷기술) 보안솔루션 구입을 지시하고 ○○○인터넷기술 사업본부장 김○○ 이사에게 임○○의 연락처(전화번호, 웹-메일 주소 등)를 전달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 11:35경 ○○○인터넷기술 담당자 박○○로부터 보안솔루션 관련 제품 소개서 등이 임○○의 웹-메일로 수신¹⁶⁾되었으며, 같은 해 11. 21.(월) 임○○가 수신된 메일을 바탕으로 보안 팀 국토정보직 4급 송○○(이하‘송○○’라 한다), 정보전문직 7급(갑) 최○○(이하‘최○○’라 한다)과 협의 후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과 중복되어 구입이 불필요하다고 보고하자 ④○○솔루션 구입과 관련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임○○의 팀장 역할¹⁷⁾을 박탈하고, 같은 해 11. 22.(화) 최○○에게 보안솔루션 구입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⑤지시를 받은 최○○가 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과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 담당팀장 송○○에게 협의 후 보고 드리겠다고 하자 심한 욕설¹⁸⁾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 5.부터 ○○○처 직원들의 진정에 따라 특정감사가 진행되자 최○○에게 보안 솔루션구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⑥2016. 9. 2.(금) ○○○처 국토정보직 5급 김○○(이하‘김○○’라 한다)에게 특근매식비 사용이 가능한 식당을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표 1]과 같이 특근매식비 11회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14) 피진정인 문답서 내용: 2016년 흑자가 많아 부서별 추가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

15) 김○○는 6~7년 전에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식에 참석한 직원(김○○, 허○○, 최○○)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보 자원 고도화 사업관련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정황상 도저히 옛날 일을 이야기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16) 안녕하세요. 임○○ 팀장님!!! ○○○인터넷기술에 박○○입니다. 저희 사업본부장 김태균 이사님 지시에 따라 웹웹, 악성 URL, 웹 위변조탐지가 가능한 웹서버세이프가이드의 견적서와 웹서버세이프가드 소개서 및 나라장터 상품정보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 ○○○처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화 지원팀(임○○, 신효성, 김○○, 최○○, 허○○)의 팀장

18) ‘야 씨마 처장보다 팀장이 낫냐? 말을 좇듯이 하나! 백하면 씨발놈들이 팀장 어찌고 저찌고’

[표 1] 특근매식비 사용내역

(단위: 원)

구분	일자	장소	사용 금액	사용자	비고
1	9. 2.(금)	□□족발돈곰탕	53,500	김○□, 임○○	저녁
2	9. 3.(토)	□□□푸드스토리	6,500	김○□	점심
3	9. 5.(월)	□□□새싹막회	99,000	김○□, 황○○, 박□□, 최○□	저녁
4	9. 8.(목)	□□집	46,000	김○□, 황○○ 외	저녁
5	9. 10.(토)	○○○푸드스토리	7,500	김○□	점심
6	9. 19.(월)	□□집	104,000	김○□, 황○○ 외	저녁
7	9. 20.(화)	□심	21,000	김○□, 송□□, 임○○	점심
8	9. 23.(금)	□심	28,000	김○□, 임○○	점심
9	9. 23.(금)	□□□발돈곰탕	75,000	김○□, 김○○, 유○○	저녁
10	9. 27.(화)	□심	35,000	김○□, 최○□, 허□□ 등	점심
11	11. 15.(화)	□□□발돈곰탕	50,000	김○□, 황○○, 이○○(웨○○○)	저녁

또한, 위 직원은 ⑦직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6. 11. 15.(화), 18:30부터 효자동 관내 CGV에서 실시한 부서 문화행사¹⁹⁾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역류성 식도염)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처 국토정보직 5급 황○○(이하‘황○○’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다른 직원에게 말하지 말고 웨이버스 이지영 부장과 ○○○○돈곰탕으로 나오게 하여 식사(음주 포함)를 하였고, ⑧같은해 11. 16.(수) 문화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본인과 황○○가 참석한 것으로 작성된 문서²⁰⁾에 최종결재를 하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영화 관람권을 받는 등 문화행사비 사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3.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⑨2016. 6. 2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외출6회, 출장12회, 휴가 1회를 본인 전결로 처리하였다.

19) 2016년 ○□□□처 문화행사 실시: ○□□□처-4876(2016.11.10.)

20) 2016년 ○□□□처 문화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처-4932(2016. 11. 16.)

[표 2] 전결 처리 내역

구분	결재 일자	근태 구분	사유	최종 결재	비고
1	6. 29.	외출	(공무) 현장업무 교육	김○□	
2	7. 22.	외출	(공무) 하반기 ICT신기술 세미나 참석	김○□	
3	8. 10.	외출	(공무) 사회공헌 활동	김○□	
4	8. 19.	출장	DR관련 업무협의(행정자치부)	김○□	
5	8. 29.	출장	DR센터 업무협의, 제2차 CPO 워크숍	김○□	
6	9. 9.	출장	가족사랑의 날 행사	김○□	
7	9. 26.	외출	(공무) 개방형 직위 채용 심사 참여	김○□	
8	9. 27.	출장	교육원 이전부지 탐방	김○□	
9	10. 10.	출장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협의회 참석	김○□	
10	10. 12.	출장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회의 참석	김○□	
11	10. 19.	출장	측량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업무협의	김○□	
12	10. 24.	외출	(공무) 개방형 직위 채용 심사 참여	김○□	
13	10. 24.	출장	4차 산업혁명 세미나 참석	김○□	
14	11. 8.	출장	공공클라우드 세미나 참석	김○□	
15	11. 15.	출장	4차 산업혁명 세미나 참석	김○□	
16	11. 21.	출장	클라우드플랫폼 설계 연구과제 협의	김○□	
17	11. 24.	외출	(공무) 업무협의q	김○□	
18	11. 25.	출장	측량통합시스템 업무점검	김○□	
19	11. 29	휴가(연차)	가사정리 차(11/30~12/2)	김○□	

그리고 위 사람은 ⑩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 차 출장(2016. 6. 9. ~ 6. 10.) 처리 후 2016. 6. 10. 국토정보직 5급 이□□(이하‘이□□’이라 한다)에게 행사 등록증을 주면서 대리출석을 지시하고 피진정인은 차량 수리 등 사적 용무를 처리 하였으며, ⑪제2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참석 차 출장(2016. 8. 30. ~ 8. 31.) 처리 후 2016. 8. 30. 아무런 연락 없이 등록시간이 되어도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아 이□□가 등록증을 대리로 발급받아 등록하는 등 출장 목적과 다르게 사적 용무를 처리 하였고, ⑫측량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업무협의 및 운영위원회 참석 차 출장(2016. 10. 20. ~ 10. 21.) 처리 후 2016.

10. 20.(목) 측량업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장이 있는 평촌으로 가지 않고 자택(경기도 □□)으로 퇴근하였으며, ⑬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비즈니스모델과 연구 세미나 참석 차 출장(2016. 10. 25. ~ 10. 26.) 처리 후 2016. 10. 26.(수) 오전 세미나에 참석 후 오□□²¹⁾에서 ○○캐스트 이□□와 점심을 먹고 오후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않는 등 출장 목적과 다르게 사적 용무를 보았다.

또한 위 사람은 ⑭ 2016. 11. 16. 14:00경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자택(경기도 □□)으로 조기 퇴근하는 등 근태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4. 직원 부당 대우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⑮ 2016. 8월경 정보전문직 3급 김□□(이하‘김□□’이라한다)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금요일 유연근무를 신청하였으나 김수석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였으며, ⑯ 2016. 9월경 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업을 진행하고자 유연근무를 요청하는 이□□에게 부서(○□□-□□)업무와 관련된 학업이 아니면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은 학력세탁을 위한 학교는 보낼 수 없으며, 학교를 가고 싶으면 타부서로 가라고 하는 등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유연근무 승인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⑰평소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에게 씨발놈이, 양아치, 씨바, 기집애, 바보야, 찌통이들야, 짱구야, 멍충아 등 저급한 욕설을 하고, 직원을 부를 때 야, 너, 니들 등으로 공직자의 품위에 어긋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업체 직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부서 직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외부업체 직원²²⁾에게도 욕을 하였고, 결재를 받기 위해 보고하고 있는

21) 서울 ○○ ○○로 11번길

이□□의 머리를 쥐어박고, 국토정보직 5급 김□□(이하‘김□□’이라한다)에게 불펜으로 배를 수차례 찌르는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였다. ⑱김○○에게 ‘니가 일을 하나 업체가 일하지’라고 하며 김○○가 담당하는 DB운영업무에 대한 질과 양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너는 내가 면접 봤으면 붙지도 못했어. 운이 좋았어’라고 하는 등 직원을 비하 하였고, DB관리 및 운영을 위해 채용된 김○○의 과거 경력 및 학력을 보고 과중한 사무분장²³⁾을 하였으며, 부서 직원에게 ‘내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본인(김○○) 스스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등 특정직원을 괴롭히는 언행을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⑲부임 후 공식적으로 사무변경을 5차례²⁴⁾ 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담당직원과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업무를 수시로 바꾸었다.

5. 직원으로부터 항용수수에 관한 사항

위 사람은 ⑳평소 직원을 심하게 꾸지람한 후 수시로 불러내어 [표 3]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비는 전부 직원들이 계산하였다.

[표 3] 호출직원 식사비 지급 내역

(단위: 원)

구분	일자	장소	금액	호출(계산)자	비고
1	6. 1.	□□□연탄생불고기	80,500	송□□	
2	6. 14.	○○○부엌	108,000	임○○	
3	6. 27.	□□□연탄생불고기	60,000	송□□	
4	7. 27.	○○딘	150,000	박□□	
5	9. 12.	□□□부엌	71,000	송□□	

22) 왜□□□ 이○○ 총판이사(김○○) 회의 자리에서 ‘씨팔...진짜...’ 욕설과 실력 없이 영업만 하는 회사라 지칭

23) 정보시스템 운영 인수인계 방안(○□□-5056: 2016.11.25.): 김○○ 사무분장-DB관리, 백업, 결과도 전산화 DB, 전자 결재시스템, 경영지원 시스템 운영,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경영지원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등

24) ○□□-사무분장 조정: ○□□-1885(2016.04.20.), ○□□-2201(2016.05.12.), ○□□-2631(2016.06.14.), ○□□-3552(2016.08.10.), ○□□-4480(2016.10.13.)

구분	일자	장소	금액	호출(계산)자	비고
6	10. 26.	□□□부엌	78,000	임○○	
7	10. 26.	○○□□바지락칼국수	30,000	황○○	
8	11. 2.	□□□백반	30,000	황○○	
9	11. 3.	○○□□바지락칼국수	68,000	황○○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복무규정」 제2조,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5조, 제7조, 제20조, 제41조, 제44조, 「직제규정시행규칙」 제13조,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제18조의 규정을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²⁵⁾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장(○○처장)은 본사 ○□□□처 국토정보직 2급 김○□를 「인사규정」 제50조와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중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5)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